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시 체 해 부 및 보 존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 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며, 또한 교육목적 시체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시신의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다. 교육 목적의 시체의 제공 근거 신설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7. ~ 7.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과 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해부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연구 경력 또는 교육·해부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경력의 환산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학 관련 분야의 연구 경력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체의 제공 목적이 교육용인지 연구용인지를 구분하여 제공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따른”을 “따라 교육용 또는 연구용 제공 목적에 맞
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연구”를 “교육 또는 연구”로,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를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각각 “법 제9조의
4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일부”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구를”을 “교육 및 연구
를”로, “일부 제공기관”을 “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
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일부”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7조 중 “일부를 수집·보존하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교육 및”으로,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	200	300	500
가의2.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2	200	300	500
나.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3	200	300	500
다. 법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4	200	300	500
다의2. 법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5	200	300	500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2호	200	300	500

마. 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0	300	500
바.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검사·질문 등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제4호	200	300	5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 1) 해부실
- 2) 검사실
- 3) 시체실(안치실)
-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보관실
- 5) 기록보관실
- 6) 사무실 및 상담실

나. 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 세부 기준

1) 해부실(실습실)

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는 것

나) 내부 벽면은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다) 냉난방, 조명시설을 갖추는 것

2) 검사실: 교육 목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병리검사 및 정도관리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

3) 시체실(안치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는 것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보관실: 교육 목적 제공을 위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보관 중 품질 관리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비와 24시간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를 갖추는 것

5) 기록보관실: 시체 및 시체의 일부에 대한 수집·보관 및 제공에 관한 기록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가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

6) 사무실 및 상담실: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씩 두어야 한다.

가. 책임자: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의사,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정한다.

나. 시체 및 시체의 일부에 대한 채취, 처리 및 관리 담당자: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책임자의 지도하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사람

다. 기증자 등의 동의 및 사후 관리, 교육 목적 제공을 위한 상담·연락 등 행정사무를 전담할 인력

비고

1.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각 시설의 경우,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각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기준 2등급 이상(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으로서 그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수의학, 의과학, 의생명과학, 의생명공학, 의공학, 생물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병		

거칠 것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① 의
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
부의 시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
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
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
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
회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

리학·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
점 이상 이수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연구 경력 또는
교육·해부 경력을 합산한 기
간이 4년 이상일 것. 이 경우
경력의 환산 기준은 「대학교
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4조를 준용한다.

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해부학 관련 분야
의 연구 경력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
에서 직접 해부하거나 시
체 해부 교육을 보조한 경력

<삭 제>

체 해부의 시행·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
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
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과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
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종합
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
가증 사본

제3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의과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의
설립 또는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종합병원인 경우: 의료기관 개
설허가증 사본

나. 별표 1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별표 1에 <u>따른</u>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 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 라. 사업계획서 마.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바. 법 제9조의7제5항에 따른 식 별정보 보호 지침 2. 법 제9조의4제2항제2호에 따 른 연구를 위한 허가를 받으 려는 경우 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서류 나.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다.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존 중인 시체의 일부가 있 는 경우 그 현황을 적은 서류
③·④ (생 략)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 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 의 일부 제공기관의 변경허가) ① 법 제9조의4제3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법 제9조의8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2. 시체의 일부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종사자 및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체의 일부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의4제3항-----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

--.

1. ---- 전부 또는 일부-----

2. ---- 전부 또는 일부-----

--
3. 교육 및 연구를 -- 전부 또는 일부 제공기관-----

4. -----
---- 전부 또는 일부 -----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2. ~ 4. (생략)

5. 법 제9조의8제3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6.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9조의8제4호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분석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1. -----
----- 제3항 -----

2. ~ 4. (현행과 같음)

5. -----
-- 전부 또는 일부 -----

6. (현행과 같음)

② -----

1. -----
-- 전부 또는 일부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체의 <u>일부를 수집·보존하여</u>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절차에 대하여 <u>2022년 1월 1일</u>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 ----- ---- <u>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보존하여 교육 및</u> ----- ----- <u>2026년 1월 1일</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1777